

第213回國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7月21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노동부소관(계속)
- 2. 최저임금법증개정법률안
- 3. 최근노동현안(계속)

審査된案件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  
가. 노동부소관(계속) ..... 1
- 2. 최저임금법증개정법률안 ..... 10  
○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23
- 3. 최근노동현안(계속) ..... 23

(14시43분 개의)

○ **委員長 劉容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국회 임시회의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立法調査官 申世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노동부소관(계속)

(14시45분)

○ **委員長 劉容泰**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일 상정을 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오늘 소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소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金樂冀**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여야 총 여섯 분의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金樂冀**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小委員長 金樂冀** 예산안심사소위원장 **金樂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노동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하여 **吳世勳** 위원과 **李柱榮** 위원, **李相洙** 위원, **李浩雄** 위원, **韓明淑**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0년7월21일 제1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 차례의 정회를 해가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대로 하되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할 것을 정부측에 주의·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文洙委員** 여기 부대의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小委員長 金樂冀** 부대의견은……

○**金文洙委員** 전문위원, 부대의견은 다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專門委員 李昌熙**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부대의견은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않겠다 하는……

○**金文洙委員** 무엇이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지요.

○**李相洙委員** 추경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낸 이 노동부 예산이 원칙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데 무엇이 벗어났는지를 명기해야 이것이 글로서 의미가 있지요.

○**委員長 劉容泰** 지금 金文洙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끌어 오신 소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小委員長 金樂冀**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금 인턴제문제 사업을 보면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대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지도 않았는데 1만 4,600명을 더 추가해서 4월초에 모집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제 와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미리 실시하고 나중에 와서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동부가 예측가능한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본 원칙에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李相洙委員**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민주당 쪽 위원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인턴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추경을 편성하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 의견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金文洙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원래 추경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보다도 더 과다집행을 미리 해버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추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런 말씀이지요?

○**小委員長 金樂冀** 그렇지요.

○**金文洙委員**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 원칙에서 벗어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서로 의견이 다른 채로 안 되니까……

○**小委員長 金樂冀**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대시 해서 1만 4,600명이라는 인원을 더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대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더 인원을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浩雄委員** 아까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턴제를 실시해서 중도탈락률이 과거 1·2차 실시할 때는 25%에 달했는데 그 예상보다 인턴제의 효과가 커져서 중도탈락률이 11% 정도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계속 수용되어야 할 인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예측을 노동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었지, 의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을 의도해서 애초부터 이렇게 추경 예산 정신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小委員長 金樂冀** 아니지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을 더 채용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당초대로 집행을 하면 됐지,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소위원장님, 지금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갑론을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부가 예측을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탈락률을 20% 이상으로 예측한 것을 전제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현재 11%밖에 탈락률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에 차질이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노동부 논리대로 하면 추경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탈락률을 미리 사전예측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의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장시간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오히려 소위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金文洙 위원께서는 대개 내용을 아시리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질의하신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효율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심의하신 위원님들 말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제가 되는 예산, 추경을 요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00년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집행한 예산집행 실적을 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장관님, 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냈습니다.

○金文洙委員 6월 말까지 다 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5월 말까지 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이 예산집행 실적을 예산소위원회에서 안 따져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소 위원장님 말씀은 무엇이나 하면 이것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만4,600명을 과다하게 너무 인턴으로 씌으로써 예산이 부족할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과다한 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꾸겠다는 말씀이고 우리 李相洙 위원님과 李浩雄 위원님 말씀은 그것과 다르거든요.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 탈락률이 떨어져서 그렇다 어느 쪽입니까?

○李相洙委員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소위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金文洙 위원 말씀처럼 처음에 노동부가 4만2,000명 정도를 수혜인원으로 잡았다가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5만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도 없는 집행을 선집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추경을 편성하더라

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미 예견했던 사실에 관해서는 추경편성은 원칙에 반한다 하지 말자 하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전자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히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후자의 문제는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 단서를 달면서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앞으로 본예산 통과시 다 예견한 사실에 관해서는 다시 추경을 편성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예산성립 이후의 사실에 관해서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면서 그것을 전체로 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란 말씀이지요. 이미 전자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소위에서 따졌습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볼 때는 방금 李相洙 위원님 해명을 들으니 좀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은 4만2,000명을 세워놓고 탈락률이 많을 테니까 5만6,000명을 미리 집행했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李相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아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 보자면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너무 실업예산을 가지고 과다한 선심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총선 4월13일 이전에 너무 몰려서 과다한 집행을 한 점 하나하고 원예산 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1만4,000명 분이나 더 집행했다 이렇게 우리 노동부의 인턴예산만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대부분이 그러한 성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위원회에서 더 많이 따질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의 해명과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소위원회가 심사를 하셨으면 지금 소위원회 속기록도 이번 국회부터 남기로 했으니까 그냥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두리뭉실한 이야기, 알듯말듯한 이런 선문답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은 10원짜리 하나도 전부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글 자체가 명료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하려면 무슨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얼마가 문제가 있다, 행정부의 답변도 이런 것이었다 명료하게 해주셔야지만 국회가 예산심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 자기들이 채택하고도 소위원들끼리 서로 견해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남들

을 설득하기 어렵고 특히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시 보완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아침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실업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다 줄었다고 모든 신문에서 난리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실업률이 낮아가지고 자칫하면 임금인상의 압박요인과 물가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대부분 언론이 논조로 삼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것도 상당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실업통계가 과연 우리의 실업실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업 자체에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만으로 본다면 지금은 실업예산을 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서 확대집행하는 것은 자칫 상당한 인력난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답변을 들어야 이 추경예산을 하지 지금 가뜩이나 예산 다 해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이런 문제, 통계와 그런 우려를 발표하는 마당에 국회가 덜렁 예산 더 집행하라고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장관님의 명확한 해명이 있는 다음에 이 심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委員** 지금 우리 金文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마 처음으로 다루시다 보니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질의가 들어가면 안 달아놓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답변하기 그렇지요?

사실상 이 답변은 노동부장관이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아까 실업률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실업률은 상당히 내려갔는데 고용은 불안하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과적으로 어찌보면 고용을 써 버리고 장기고용자가 없다는 것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고용은 불안하다 이 근본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는 인턴제 확대사업에서 아까 여기 보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른 이유를 보면 1만4,600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40억 조금 더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389억8,2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이 인원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문제점을 장관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소위원회가 달았던 어디가 달았던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써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써 문제 정리하는 것이 빠르게 넘어갈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 그렇게……

○**委員長 劉容泰** 申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申溪輪委員** 지금 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못 되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위원회가 오전내 회의를 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것이 없으면 이 문제를 수용하실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게 되면 추가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는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申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보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 이 예산안 심사보고서 자체를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보다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추경예산을 긴박한 사유가 생겨서 또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안 따져주면 사실 따지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장관께서도 명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보고서 채택하고 나중에 장관의 답변을 듣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통과 여부를 두고 집행자인 장관의 명확한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申溪輪委員**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말씀하고 제 말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동료위원을 소

위원장으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저기 서서 장관이 답변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를테면 소위 보고서를 접수를 하더라도 장관에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과는 나중에 시키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한 말씀 하세요.

○**金晟祚委員**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정부측에……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편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촉구하는 부대의견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한 후에 그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동을 받아서 그렇게 통과시켜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측에 촉구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경고성 촉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만이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까 소위원회를 하시는 가운데 위원장께서 여기 보고서 낸 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측에 유감된 부분, 지적되는 부분들을 촉구를 다 하셨으리라고 미루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료위원인 우리 金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 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근원적인 것을 다시 따지기 시작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한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金晟祚委員**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 의미라면 그냥 하면서 정부측에 주의촉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지 지금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다 이 말은 이 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따로 별지로 혹은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金晟祚委員**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전부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李相洙委員** 아니지요, 주의촉구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첨부한다 이런 뜻이지요. 이 의미가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할 것을 정부측에 주의촉구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첨부하면서 이것을 합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李浩雄委員** 예, 그런 내용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만일에 굳이 우리 金文洙 위원께서 너무 추상적이다 향후 원칙이라는 말이 약간 애매하다고 한다면 그 향후원칙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원칙에 반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소위원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李相洙委員** 차라리 분명히 하고 싶으면 고쳐서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이러지 말고 “향후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원칙에 벗어나는……”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金文洙委員** 예산성립 후에……

○**李相洙委員**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는 편성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지요.

○**委員長 劉容泰** 이렇게 하세요.

장관께서 나오셔서 지금 함께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경위 설명 내지 해명을 잠시 해주시고 문구에 대한 것은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文洙 위원님께서 이것은 4·13 총선에 선심용으로 미리 당겨서 많이 집행하고 모자라니까 추경을 달라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참이나 그러한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제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실업대책을 가지고 총선에 사용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4월 이후에 집행되었다는 사실로 입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업예산을 계속 편성할 것이냐 또 추경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이와 같은 실업대책을 병행하는 가운데 현재 통계적으로 잡히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대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실업률이 약 칠팔만 정도 올라가서 지금 70만명 대, 80만명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90만명 대로 올라가는 것은 금세 올라가고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가서 방학 때가 되면 다소 청년실업자가 증가될 염려가 있고 하반기에 동절기로 들어가면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업대책은 꾸준히 그러나 그 실업률의 변동추이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朴仁相 위원님께서 실업률은 저하되는데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을 많이 쓰지 못하다가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람을 조금 더 필요로 하게 되어 가지고 사람을 써서 전체적인 실업률은 많이 내려갔습니다마는 경기에 대한 경제인들의, 기업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우선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람을 늘리자 이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고용구조는 조금 모양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점을 매우 걱정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개선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저는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참가하셨던 위원님 의사 중에 아마 장관님의 뜻이 포함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중도탈락률이 떨어졌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李浩雄委員** 그것이 아니에요.

○**金晟祚委員**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 인턴사업을 시행할 때 20% 넘는 중도탈락률이 있었고 다음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그 회사에 채용되는 율이 50%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을 전체적으로는 4만2,000명 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도탈락하고 다음에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3개월 인턴으로 지원하고 3개월 후에 정식고용을 하면 3개월 분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율을 계산해서 5만6,000명 정도를 처음에 시작하면 중도탈락하는 것 이렇게 다 빼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 4만2,000명 분 예산 가지고 결국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중도탈락률도 아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직접 고용되는 율도 한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서 많이 중간에 탈락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예산이 모자라게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추세를 치밀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 하는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浩雄委員** 그런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쪽에 보면 다시 추경요구액 389억8,200만원 해서 연수기간 지원, 정규직 채용에다가 1만4,600명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78%로 해서 거기도 중도탈락률을 22%로 계정했습니다. 지금 1, 2차 인턴사업에도 중도탈락률이 많이 저하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차질이 왔다 하는 논고를 세웠는데 추경예산에서 1만4,600명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에도 중도탈락률을 또 22%로 적용하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여기 계산은 중도탈락률이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 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한 22%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예산소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이 중도탈락률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적용한 중도탈락률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중도탈락률을 예측한 것이고 이것은 현 상태의 정규직 고용률 그러니까 현재 추경예산 소요를 계산

하기 위한 탈락률입니다.

○李柱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劉容泰 예, 말씀하세요.

○李柱榮 委員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사실 관계만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측에 추경예산의 본질에 또 원칙에 반하는 그런 예산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요구와 또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을 주의 또 경고하는 그런 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아까 소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부분들이 모두 4월 총선 이전 시점에서 다 선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인턴들을 채용하고 하는 그 부분들도 선거 이후에 된 것이 아니고 선거 이전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노동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장관님 답변하고 또 저희들 주장하고 좀 견해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실관계 자체는 선거 이전에 사람들을 당초 예상했던 인원 이상으로 채용을 했던 것은 맞지 않느냐, 그 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총선 선심용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 몫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대의견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은 이렇게 넘어왔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에다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원칙에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넘기는 선에서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善政 李柱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된 1만4,600명이 선거 전까지는 7,100명이었고 선거 후에 7,5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 전에 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柱榮 委員 그런데 아까 장관님은 전부 다 선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 선심용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전부 선거 전에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申溪輪 委員 걱정도 할 수 있고 정치공세도 할 수 있고 이미 정치공세가 정치분야의 하나의 영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계속되는 질의, 총선용이나 아니냐 이런 질의는 상당히 듣기 민망스럽습니다. 저도 이것이 총선용일까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자료를 놓고 시기별로 따져봤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여당위원들이 총선용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金文洙 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상임위에서까지 공박이 된다면 대단히 곤란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계획을 세운 노동부 관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료위원들한테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쓸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노동환경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정말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위원회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자꾸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鄭 위원 말씀하세요.

○鄭宇澤 委員 제가 대체토론 때 끝까지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까지 진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안소위에 넘기기 전에 대체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나온 것을 총 취합해서 소위에 보냈고 金樂冀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셔서 오늘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토론이 안 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칙상으로 볼 때에는 그때 대체토론에서 다 논의가 되어서 얘기가 진전이 되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총선용이나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의 효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 예산 편성을 자제한다.”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놓아야지 우리가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주의촉구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 대고 장관님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주의촉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이 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잠시 위원장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鄭宇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정부측에 촉구하는 부대의견 이것과 관련해서 金文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얘기가 진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양당 간사, 소위원회장과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촉구하는 의견과 관련된 문구를 정리해서 마무리짓도록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통과는 기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明淑委員** 지금 여기에서 된 모든 이야기가 소위원회에서 다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나왔고 실업률 얘기도 나왔고 실업률에 대한 반론도 나왔고 모든 것이 다 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된다는 것은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金文洙 위원이 지적하신 너무 좀 두리몽실한 부대사항에 대한 것을 조금만 절충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장관님한테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아까 인턴 그 예산집행이 선거 전에 7,100명분, 선거 후에 7,5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런데 이게 모집은 언제였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모집한 것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文洙委員** 선거 전에 7,100명 모집하고 선거 후에 7,500명 모집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집행도 그때 하고…… 모집은 선거 전에 다 한 것 아니에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모집은 4·13 전에 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지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모집도 그러면 7,100명은 4·13 전에 하고 4·13 후에 7,500명을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관련자료를 내주시고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 다음에 다 소위원회에서 하셨다고 그러지만, 지금 통계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업문제는 핵심이 뭐냐 하면 40대, 50대 이상의 고령 장기실업자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이 추경은 뭐냐 하면 청소년용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청소년 실업자도 문제겠지만 더 문제는 40, 50대 이상의 고령 장기실업자가 가장 해당되는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도 중추를 이루고 가장으로서 생활을 부담해야 되는 이 고령 장기실업자 대책은 저는 긴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냈다면 저도 앞장서서 그것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통계는 제가 체감하는 것 하고 비슷한 것이예요. 그런데 청소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면 무슨 일이라도 좀 험한 일이지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추경예산안 편성 자체의 기본방향이 틀렸다. 저는 그런 뜻에서 총선 선심용이라고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 50대 이상의 고령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劉容泰** 지금 金文洙 위원이 말씀하신 그 의견은 사실 대체토론 때 나왔어야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토론이 끝나고 이 안을 세목별로 전부 사업별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마무리한 것을 지금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소위원회의 그동안 심의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金文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추경예산안은 확정을 지어놓고 차후 본 예산을 또 그후 발생하는 2차 추경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상 종결토록 하고……



○**金文洙委員** 장관님 답변을 좀 들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대체토론할 때 실업통계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고령장기실업자 문제는 오늘 처음으로 그 통계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때 대체토론 이후에 생긴 사실을 가지고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李相洙委員** 金 위원님, 그것은 이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이니까……

○**金文洙委員** 이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고령장기실업자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李相洙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예산은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경편성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쪽 당에서 소위원들 동수로 나서 충분한 심의를 했고 사실 그 심의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보았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합의를 다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합의문 중에 상호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사한테 말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고쳐서 아까 양당에서 사실상 합의한 대로 향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경편성해야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할 것으로 이렇게 고치기로 하고 이것 통과시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金文洙 위원께서 정말로 지금 우리의 실업문제는 고령자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달리 문제를 제기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것 결론내는 데에 있어서 다시 또 그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쳐서 통과시켜 놓고 이따가 현안질의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물으면 어떨까요?

○**金文洙委員**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대책을 다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집행장관으로서 이 예산집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우리가 국회에서 그 점 주의를 촉구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2분 이내에 답변하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당시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좀 과다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고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이와 같이 특성별로 장기실업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런 장기실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별 실업대책으로 실업대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다른 경우에 비해서 두 배로, 6개월 지원하는 것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이나 실업자 재취직 훈련 대상자 선발시에도 장기실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실업자는 고용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으로 또 자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포지원형식을 가진 그러한 형식의 자영업 창업지원사업도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에다가 장기실업자 전담창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장기실업 가능성의 예측모델도 개발해서 장기실업자를 조기에 파악해서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실업자들을 위해서 성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장기실업자들이 구직의욕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실업대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번에 전체 실업률은 줄었는데 장기실업자는 오히려 한 5,000명 늘었다고 되어 있어서 유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직 실업자는 여전히 줄었고 전체적인 장기실업자가 조금 늘었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실업대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4, 50대 이상의 장기실업자대책에 대한 것을 차기 회의 있을 때에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이상 본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간사와 소위원장과 협의해서 문안을 수정하기로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부대의견을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측에 촉구한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문안을 “향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부측에 주의 또는 촉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정부측에 부대의견으로 촉구하고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에서 촉구한 것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촉구한 것이나 국회가 정부측에 촉구한 것은 마찬가지로……

○**金文洙 委員** 부대의견 다는 것은 달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따가 소위원장과 위원장이 전부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 방금 낭독하신 부분대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원칙에 벗어날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委員長 劉容泰** 그러면 소위원장과 위원장한테 위임하세요.

○**金文洙 委員** 그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양당 간사 운운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끌 염려가 있으니까 소위원장과 위원장한테 위임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부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 2.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15시38분)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지금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은 7월1일부터 적용사업장이 전사업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9월1일부터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조항 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하느냐 또는 종전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두 개 조항입니

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專門委員 李昌熙**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의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확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적용제외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 제3조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적용확대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약 88만개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165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제 보호대상에 편입되고 이중 현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36만 1,600원보다 낮은 2만4,000명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실질적 보호대상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기본적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노동력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기업, 사회, 국가 전반에 편익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법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근로계층간 소득격차 및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 확대로 기업규모간 임금 및 소득격차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ILO 등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법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최저임금 적용확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영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금번 법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더라도 99년 기준 영향률은 1.2%로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는 바, 실질적인 보호조치로는 미

흡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영향률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고용감소 및 실업 증가의 우려도 있으므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최저임금액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노동계에서는 2000년도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의 2분의 1인 월 61만1,616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적용 사업장의 누락,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 최저임금제의 확대적용의 경우에도 제도정착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법상의 각 조항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외에 의결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른 명칭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인 기능을 고려한 위원회의 명칭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 제12조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13조의 기능 등에서 심의 및 재심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원회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상 용어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현행의 심의위원회로 존치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仁相委員** 지금 여기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을 내놓았는데 노동부에서 낸 내용을 보면 지금 법률하고 조금 상치된 부분은, 제 의견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적용범위가 틀리지요? 장관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勞働部長官 崔善政**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사업장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5인 이상을 의미하는지 1인 이상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그래 가지고 법 개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면 법 개정에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범위를 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확대적용을 하지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보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2항에 들어가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했을 때 앞에 보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다 한다고 해놓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이런 조항 몇 개 조항만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朴仁相委員** 만약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최저임금법에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까?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최저임금은 이번에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규모에 따라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朴仁相委員** 원칙적으로 보면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

까?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이유가 뭐니까?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사항만 특별히 정한 것이 최저임금법인데 이 최저임금법을 전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앞으로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에 상치되는 적용범위는 전연 없다고 노동부는 해석을 하고 있군요.

○**勞働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吳世勳委員** 이번 개정안의 단서조항을 보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가사사용인을 특별히 제외한 이유는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崔善政**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10조에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吳世勳委員** 맞추는 것은 좋은데요, 노동부의 입장은 추후에도 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껴놓고 계속해서 노동정책을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勞働部長官 崔善政**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환경,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시에 이 부분도 현 단계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ILO 권고안 13조를 보니까 가사사용인, 그러니까 가내노동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가내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가내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내노동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특별히 보호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의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그것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포기하겠다는 이렇게 비쳐져서 단일법안을 따로 마련을 해가면서까지 외국에서는 가내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여쭙어보는 것입니다.

○**勞働部長官 崔善政** 현 단계에서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는데도 상당한 행정관리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는 가정이 다소 폐쇄적이고 해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수준 이런 것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행정이 과연 거기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깊숙히 가사사용인까지 하려면 남의 가정에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고용관행이 점차 달라지고 우리 가사사용인도 고용관계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좀 명확해지는 시점에 이르면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최저임금액이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왔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률이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말입니다. 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영향이 확대는 좀 되겠지만 앞으로 최저임금법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외국의 수준에 어느 정도 육박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명칭을 바꾸기로 되어 있는 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쪽 위원이 있고 사쪽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위원이 있는데,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ILO 협약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고안을 보면 중립적인 인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공익위원이지요, 이 중립적인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서 선정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노사단체와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노쪽은 노쪽대로 사쪽은 사쪽대로 입장을 유지하다가 타결시한이 임박해지면 결국 중립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여태까지 지속이 되어 왔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왕 최저임금법을 손을 볼 것 같으면 이 명칭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LO 권고안 수준에 맞는 그런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勞働部長官 崔善政** 지금 노동계, 사용자계 대표는 그쪽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고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사전에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합시다라는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공익위원으로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노사간이 대립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중도적 역할을 하는 그 공익위원들마저도 너무 편을 확연하게 갈라 놓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나가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는 그러한 방

향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글썬요.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요, 그동안에 최저임금액이 산정된 것이 외국이 비해서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신데 초기에는 노동자임금 평균 40% 수준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영향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하에서 계속 그냥 맡겨 달라, 자유재량에 맡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여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노·사·공익 대표가 각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서 입장이 팽팽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간에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예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뭐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경직적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맡겨 달라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제도화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담도 덜고. 이번부터 민주노총에서 들어 가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들어와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더 심각한 의견이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훤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제도화해 놓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의견대립이 팽팽해져 가지고 옆에서 제3자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아주 팽팽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공익위원까지도 노사 양쪽의 추천을 받아서 했을 때 과연 공익위원이 중립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사 양측의 어느 한 쪽이라도 참여해야만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그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최저임금제를 전 사업장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권을 담보해 주는 의미에 있어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적절한 법률개정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추가해서 장관께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전에도 되풀이해서 질의했지만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수준은 36만1,600원으로서 아까 吳世勳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최저임금이 낮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지 않고, 실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임금수준이 최소한 5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액수가 되는 셈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 거기에 못미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 최저임금과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사이에 계속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번에 법률개정을 계기로 해서 저소득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 36만1,6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 56만원 정도로 50만원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임금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향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확실히 낮은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영향률도 적절하게 높이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계비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각종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해서 통보를 해오면 저희 정부는 이것이 너무 맞지 않다 싶으면 재심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심의 요구를 해도 그대로 의결을 하면 그대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직접 이 수준을 얼마만큼 더 올린다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개최시에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걱정을 저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화를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수준보다는 상당수 그래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李相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相洙委員 本위원회도 이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수혜 노동자가 적은 이유, 바꾸어 얘기하면 영향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용례로 보면 심의회라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는 심의·의결을 다 포함시키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심의·의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법을 보니까 8조에는 “심의·의결” 이렇게 구분해서 썼고, 12조에는 “심의를 위하여” 라고 했고, 13조에는 “심의 및 재심의” 해가지고 마치 넓은 의미의 심의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치려면 조문 전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조, 13조를 고치든지 아니면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 하면 뭐 하지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그 말이 더 나올 것도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관련조항의 자구는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朴仁相委員 아까 답변하신 국장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제가 지금 혼동을 하는데 吳世勳 위원이 아까 질의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10조에 보면 엄밀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법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10조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법 제3조에 “1인 이하까지 적용을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최저임금 적용범위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서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물은 이유가 1인까지 적용 확대해석을 했을 때 전체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전체 다 한다고 답변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가사노동과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노동부에 구분규정이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업장의 규모를 보아서 이번 법 개정 같이 되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이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가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가사사용인은 저희가 근로자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朴仁相委員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소기업중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기업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몇 친족을 데리고, 몇 사람 데리고 있으면서 “아, 이거 우리 친족들이 쓰는 사업장이지, 일반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노동부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이 법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률을 몇%로 계산하느냐, 현재 그러면 노동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고쳤을 때 영향률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최저임금영향률은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높게 잡으면 영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준거로 작용하는 것이 영향률인데 이것은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에 동거의 친족이라든지 가사사용 문제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영향률에 별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또 나오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을 퇴직금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4인 이하 사업장에게까지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적용제외를 해놓은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제 얘기는 최저임금법을 고치려면 확실하게 근로기준법부터 뜯어고치면서 문제를 들고나와야지 문맥 하나만 고쳐서 밑으로 적용 확대해석한다, 아마 여기에 따르는 관련조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은 적용이 되고 어느 사람은 친족으로 하니까 안되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劉容泰 위원장, 申溪輪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부에서도 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와서 1인 이하로 적용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문예공포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친족끼리 하는 것이라 적용 안 해도 괜찮다,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영향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그 결정된 최저임금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 법률을 고쳐보았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뜯어고치자 이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고칠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고치자 이것입니다.

장관님,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이라도 한 마디 해보십시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鄭秉錫**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10조를 고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법 시행이나 운영에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이것을 고쳐놓고 나면 상당한 함정이 또 나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대비시켜 놓고 보면 시행령과 대통령령과 모법과 최저임금법과 맞추어 보면 차이점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전문부서이니까 거기에서 잘 고쳐서 냈으리라 믿습시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朴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을 아예 고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근로기준법을 고칠 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최저임금법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인용하던 것을 바로 이 법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단 최저임금제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金樂冀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樂冀委員** 지금 최저임금법 3조를 가지고 조급 전에 우리 朴仁相 위원님과 吳世勳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조항 적용제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 사업장 확대를 할 바에는 굳이 이것을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협약 ILO협약에도 지금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ILO협약 26호에 가내노동자도 보장하고 있어요. 국제협약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확대적용할 바에는 단서조항을 없애야지 이것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공장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만 데리고 하면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 명 정도 데리고 하는데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친족만 데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명, 세 명 정도. 그러면 한 사람을 사용하더라도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단서조항,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勞動部長官 崔善政** 아직까지는 자기 가족끼리 조그마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했을 때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 일본이나 미국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근로기준법을 바로 인용해서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도 동거인 친족만을 사



용하는 사업 또 가사사용인을 적용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서를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는가 너무 해 놓으면 이것도 관리 못하고 저것도 관리 못하고 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金樂冀委員** 지금 노동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다 좋은 현상입니다. 모든 법률이나 모든 적용대상을 다 확대해서 적용하는데 어차피 근로자의 개념도 우리가 재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자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노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노동자고 물론 사용종속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꼭 사용종속관계만 가지고 노동자냐 아니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노동자의 개념도 재정리해야 할 시기가 왔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친족이 아닌 사람 한 사람 고용하고 있어도 그것은 적용되고 자기 친족을 한 네다섯 명 고용하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우선 자기가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못 받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이것을 적용제외를 꼭 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재같은 것도 확대적용하고 모든 것을 확대해 나간다 이것이에요. 그만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은 소위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임금지대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법으로 보장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장에서 소위 노동력이 착취당할 수 있고 적용제외사업 그런 데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깎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데를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의 가족관계라는 것이 친족간에는 서로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아주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남간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고용종속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

해서 보호를 보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직은…… 친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희생하면서 돕고 하는 관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동거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같이 살고 또 친족간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金樂冀委員** 사용종속관계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거기에 직접 법률이 개입해서 임금수준을 이래라 저래라 할……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최저임금 수준과 영향률을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영향률이 금년 수준이 한 1.2% 수준이 되지요? 이것을 확대적용했을 때 과연 몇 프로 정도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현재 임금수준으로 하면 0.1%가 상승해 가지고 1.2%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오늘…… 앞으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6.6%를 인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향률이 1.9%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물론 이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은 퇴장하고 노동계측 위원과 공익위원이 의결을 주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金樂冀委員** 하여튼 지금 그것은 심의과정이고 한 가지 근본적으로 영향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법률을 개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법 2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23조를 보면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실태생계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연구원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도 노동자측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닦할 일은 아닙니까마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주어야지 전부 노사단체교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손놓고 앉았다가 양쪽의 눈치보고

한 쪽 손들어 주고 기분 좋으면 이 쪽 손들고 기분 나쁘면 저 쪽 손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임금은 아주 형편없이 결정되고…… 퇴장하고 서로 밀치고 다치고 이런 단체교섭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정말 공정하게 이것을 심의해서 저임금지대를 일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을 조사해서 통계로 나올 때는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심의시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조사해야 한다지 그것을 써먹어라,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3조를 개정해서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든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고는 여기 개정하는 것 보니까 확대적용하는 것 이외에 확대적용한다고 해서 재정 지원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를 32만원을 주는데 일하고도 36만원 받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놓고 32만원 받으려고 하지.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심의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働部長官 崔善政**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최저임금에 근로자의 생계실태조사 결과를 참작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조는 노동부가 이런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4조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해 가지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생계비는 23조에 의해서 조사한 것,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 등 그런 것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장치를 법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자료는 그야말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노동계 대표, 사용자 대표 등

등이 모여서……

○**金樂冀委員** 장관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고를 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장관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요구를 합니다. 심의를 한 두서너 번 할 때는 자료 갖다 놓고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치위버리고 몇 프로나 놓고 줄다리기 한다 이것이에요. 전혀 자료 써먹지 않습니다. 괜히 갖다 놓고 한두 번 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냥 갖다 놓고 보지도 않아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 기능을 해서 저임금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임금을 끌어올려서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영향률이 1.2%로 되고 확대적용해도 0.1%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3% 선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주 측에서 예를 들어서 한계기업이다, 형편없는 것 많아요. 맨날 노사 단체교섭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심의 제기능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소위 객관성있는 자료가 마련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법률로 제도적 장치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법 취지와 본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사 단체교섭 형식으로 싸움이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공익위원들, 교수님들 오시는데 교수님들이 그냥 어느 편 들어 주면 거기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국가권력이 개입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개정할 때에…… 기왕에 개정안을 내 놓았으면 그러한 비현실적인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명칭 고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들여서 실태생계비 조사 해, 노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 연구해서 조사 해, 조사 해 놓은 것 한두 번 보고 나중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하면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신력있는 자료를 갖다 놓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심의시 적극 반영하는, 문맥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런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지금까지 운영행태가 다소 대립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정상화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이대로 반영해라, 저것은 저대로 반영해라 하면 심의위원들의 심의권능을 완전히 제약해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위원회 만들 것 없이 그냥 법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노사 양측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지요.

이 23조같은 경우를 지금 “조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든가 이런 표현으로 고치면 그래도 그 자료를 엄청난 예산 들여서 쓴 것이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계속 보면 파행하고 합니다. 국회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반영해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지금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정부가 간섭하고 무슨 권능을 뭐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조사자료, 객관성있는 조사자료를 반영해라 하는 정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李浩雄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李浩雄委員** 이 법률안을 여기서 확정할 것이 아니고 법안소위를 구성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더 토론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委員長代理 申溪輪**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李浩雄委員**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申溪輪** 지금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이 법안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정도로 논의를 끝내고 앞으로 구성될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간단한 두 개의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또 이번 임시국회가 25일에 끝나니까 오늘 여기서 충분한 심의를 했으니까 결정된다고 하면 조금 더 논의를 하다가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정해 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그러면 李相洙 위원님은 무슨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李相洙委員** 저는 이 법에 대해서 金樂冀 위원님도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손을 보는 문제는 간단치 않으니까 앞으로 야당이나 다른 당에서 안을 내서 심의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현재의 이 개정안도 상당히 초당적인 의미에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를 거치지 말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제가 보니까 金樂冀 위원님의 질의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빨리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충분히 추후에 의견수렴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李相洙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지만……

○**李柱榮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申溪輪**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李柱榮委員** 예.

○**委員長代理 申溪輪** 말씀하십시오.

○**李柱榮委員** 저도 그 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최저임금법중개정 법률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아까 金樂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는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왜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 하면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근로기준법과는 적용범위를 달리 하고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하고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까 근로기준법에 이 단서조항이 있고 거기하고 어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거의 친족이라든지 가사사용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함정이 많은 그런 조항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 조항들 때문에 아동학대라든지 친족을 빌미로 한 노예상태의 노동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붓자식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데려다 놓고 친족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노예상태로 혹사를 시키고 이런 어떤 빌미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근로기준법하고 적용범위를 일치시키지 않은 최저임금 보장을 하기 위한 법개정이란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가정 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에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추세는 가정 내의 어떤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같은 것도 종전에는 가정 문제니까 부부기간에 싸움하고 애들 때리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굳이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공권력 개입의 자제를 내세워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그 이념이 변화되어서 가정 내의 인권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듯이 동거친족간의 노동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노동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범위를 확대하는 마당이면 이것까지 지워버리자 이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浩雄委員 李柱榮 위원님 발언에 찬성하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기서 결정할 것인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것인가를 여쭙어봤던 것이 사실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단서조항을 두는 이유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이라면 단서조항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실태를 파악하고 구별하는데 애매모호하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이런 관계로 볼 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서상으로나 전통상으로 합당치 않다 이런 취지라면 그렇다면 그 단서조항이 더더욱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가족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라면 기본적으로 법이 강제하고 규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더라도 되고 그 최소한의 필요조건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친족관계라면 그것은 법이 강제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단서조항을 둬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함정이 많다는 李柱榮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고치는 마당에 있어서 보다 내용을 확실하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단서조항을 두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답변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밖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이 문제는 아까 吳世勳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金文洙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申溪輪 金文洙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金文洙委員 예.

○委員長代理 申溪輪 질의하십시오.

○金文洙委員 저도 최저임금법이 이왕 나왔으니 손을 본다면 3조 단서조항 삭제하는 것 찬성하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조금 더 논의해 보고 싶은 것은 8조에 보니까 최저임금의 결정을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시행은 9월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1월1일이면 1월1일이지 이것이 아마 법 개정 당시 무슨 시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손을 봐가지고 경과규정을 두든지 해서 1월1일부터 하든지 해야지 사실 노동자들 현장에 가면 잘 모르거든요. 법 자체도 개념이 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는 몇 월 며칠부터, 뭐는 며칠…… 이것 도저히 저도 잘 못 외우는데 그 부분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시행하고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라도 법안심사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해서 이왕 나온 김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정비하고 특히 지금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급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1인 최저생활급을 32만원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이 36만1,600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그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32만원 받고 놀지 돈 조금 더 벌려고 일할 사람 얼마나, 또 아까도 보면 직업훈련만 받아도 40만원 주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를 두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위원회대안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李相洙委員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범위의 단서라든지 그밖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소위를 구성했을 때 과연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 통과시켜 주고 우리가 별도로 다시 논의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을지 어느 것이 더 득이 될지 한 번 생각해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통과되면 이 범위 내에서 우선 9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한데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9월1일을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보신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지금 장관께서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단서조항 문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金文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와 또 李相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감으로써 그렇게 되면 적용이 내년부터 됩니까? 그런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나서 저희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勞働部長官 崔善政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문제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최저임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현재 노동관계법이 대부분 가사사용인하고 동거의 친족을 제외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 기회에 바꿀 경우에는 전체의 노동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은 우선 근로기준법을 고칠 때에 그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서 고치면 나머지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 모든 법들이 따라서 고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날짜가 9월1일부터 그러면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것이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9월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바뀌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협약이 대략적으로 8월 가면 대충 사업장에서 끝나는데 이것이 1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하나의 개별사업장의 임금교섭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 하는, 인상하는데 오히려 한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임단협이 대부분 정리되는 9월로 한 것 같은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니까 차제에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지금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세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朴仁相 위원님 이에 관련된 질의 이십니까?

○**朴仁相委員** 예, 관련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말씀해 주십시오.

○**朴仁相委員** 그런데 아까 소위를 결성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사실상 이 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인 이하까지 적용을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9월1일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전체를 묶어놓고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시간을 요하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우리도 아까 얘기대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영향력은 작다고 치더라도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 9월1일부터 받을 사람들이 전부 소외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9월1일 4인 이하 근로자들이 적용받도록 만들어 놓고 아까 장관님도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고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놓고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선 9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찬성발언을 하면서 단 근로기준법을 고치되 노동부에서 큰 틀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틀에서 고쳐 주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아서 노동기준이라는 용어가 많지 근로기준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법이 있는데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용어해석이, 지금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보면 한참 노동자가 어찌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근로자라고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맞춘다고 한다면 노동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석해 가지고 노동자면 노동자로서 정리를 내버리자 이겁니다. 국제적으로 가도 노동자로 정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8·15 해방 이후에 이념적 논쟁에서 나와 가지고 이북에서 노동당 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노동자 하지 말고 근로자라고 하자 이래 가지고 축소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고치고 노동조합법, 쟁

의조정법 다 있으니까 또 부도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부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근로부라고 해야지 왜 노동부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노동자로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하면서 근로기준법도 전부 한꺼번에 뜯어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그것을 강하게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 부분은 일단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만큼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文洙委員** 제 생각에는 우리 朴仁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 가지고 지금 2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이면 24일 하루 정해 가지고 소위를 그동안에 심도있게 빨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 구성없이 해야될 만큼 무슨 긴박한 사안이 있습니까? 25일까지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저희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申溪輪**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참고로 개정 국회법에는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심사는 종전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안건은 반드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야 되면 해야지요.

(申溪輪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지요.

○**委員長 劉容泰**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회)

○**委員長 劉容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중에 잠시 정회를 한 것은 이 법안이 오늘 여기에서 예외조항 두 개 조항을 다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하는 위원이 계시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토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사전 결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인 노동위 현안을 소위원회와 병행운영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대체토론을 대충 종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을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7시50분)

○委員長 劉容泰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의 세 분 위원님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의 세 분 위원님 해서 도합 6인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협의를 한 결과 민주당의 申溪輪 위원님, 朴仁相 위원님, 韓明淑 위원님, 한나라당에서 吳世勳 위원님, 李柱榮 위원님, 金晟祚 위원님 세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하고 소위의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소속의 申溪輪 위원님이 맡아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양당 간사회의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당 간사회의에서 논의된 여섯 분의 위원 그리고 이중 申溪輪 위원님을 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으로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소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앉아서 계속해서 본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최근노동현안(계속)

(17시52분)

○委員長 劉容泰 의사일정 제3항 최근노동현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현안보고를 한 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劉容泰 현안보고 들을 것은 대충 지난번에 다 듣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현안보고 듣다

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질의하실 시간이 모자라서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시지요.

金文洙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金文洙委員 오늘 보고된 현안자료를 보면 저번 것이라서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이후에 롯데호텔과 또 사회보험노조, 두 개의 현안사업장 문제가 진정이 되지 않고 날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특별조사를 마련해서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해주십시오. 롯데호텔 여직원 327명의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劉容泰 말씀하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롯데호텔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로부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해 가지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기술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300명이 넘는 진정 건이라서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조사를 해가지고는 단시일내에 일을 매듭짓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준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전부 감독관인지 또.....

여성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세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청 소속 근로감독과와 근로여성과를 합쳐서 총 11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회의실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회의실이라면 서울지방청이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洸 서울지방청의 회의실에 별도 조사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11명이 다 여성감독관이십니까?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아닙니다. 남녀 전부해서…… 롯데호텔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에 있는 일반감독관과 근로여성과에 있는 감독관을 합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감독관이 남녀 몇 명이시지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지금 성별로는 아직…… 아직 인원결정까지는 다 안 되어 있고 일부 근로여성과의 여성 두 명과 감독관의 담당감독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현재 차출 중에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제 생각에는 이왕에 조사를 하시려면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감독관들이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사 자체의 정확성이나 또 수사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권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여성감독관들이 직접 많이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반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리고 수사를 11명이 하는데 총 인원이 신문의 보도는 327명이라고 그러는데……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327명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11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서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대로 인원을 더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 하시지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지금은 서류심사 중에 있고 또 롯데호텔 자체가 지금 임금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짓는 대로 본인들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교섭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요?

○**勞動部勤勞女性政策局長職務代理 申 洌**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현재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신속하게 조사해서 오래 끌지 않게 인원도 늘려가지고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11명이서 하루에 20명 해도 보름 이상 걸립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제가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직접 구두로 특별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이 미처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여성근로감독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여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성근로감독관들이 담당해서 피해여성들이…… 현재 파업 중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서 얼마나 조사에 응해 주느냐 이것이 빨리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됩니다.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 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쪽 조사를 함께 병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문제에 관해서 강제조사가 가능한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저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사용자 측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하여튼 여러 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롯데호텔노조 파업 폭력진압 과정에서 국제노동단체 항의 빗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노련에서도 항의서를 대통령께 보내고 여러 가지를 촉구하고 있고 또 국제식품농업호텔요식업담배노련에서도 두 차례 대통령께 항의서한을 보내고 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10여개국의 노총과 국제운수노련, 각국 관광노련 등 30여개 국제 노동조직에서 대통령께 항의서한을 보냈고 또 연대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사업장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많은 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혼란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로서는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제노동단체의 항의와 대통령께 보내는 여러 가지 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대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방중재조항을 가지고 중재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에 있는 일방중재조항을 근거로 해서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중재를 내림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파업을 했는데도 공권력이 개입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ILO로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이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현재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응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국제 노동단체에서 온 각종 서한 중에서 롯데호텔과 관련해서 온 그 부분을 전부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노동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세울 것인지 계획같은 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장관님, 보충해서 묻겠는데 두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노동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는 것은 단체협약이 5월…… 다시 사실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 단체협약이 유효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3개월간은 기존 단협이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중재신청을 한 것은 결코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지금 교섭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진전이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되었던 대화에 양측이 아주 성의있게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응어리가 좀 있어서 서로 협상과 대화를 전개하는데 입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입구만 통과하면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의외로 빠른 속도로 좋은 결말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하여튼 그 점은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당연히 교섭해태 내지 회피는 사실상 노동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서로간에 감정적인 골을 넘어서 대화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개부대를 91명 투입한 부분, 이 일때문에 많은 문제가 증폭이 돼버렸습니까마는 적어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대테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술개부대를 투입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47호에 있네요.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金文洙委員** 대테러활동 지침을 구하셔서, 대통령훈령 제47호입니다. 99년4월1일에 개정했네요. 여기 이 지침을 검토하시고 이 내용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이 중에 일부를 보니까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와 경찰청에 각각 군과 경찰요원으로 구성된 대테러 특공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특공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경찰청훈령 제210호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공대 운영규칙을 보더라도 롯데호텔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경찰청으로서 는 물론…… 규칙 제6조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호가 각종 테러 사전예방 및 진압이고 2호가 인질사건발생시 진압 및 인질구출, 3호에 총기·폭발물·화생방 사건 등 특수범죄 진압, 국제조직범죄 포함, 4호가 건물 불법점거·난동진압, 5호가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6호가 요인 경호 및 대테러협의회 결정사항 수행, 여기를 볼 때는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태여 한다면 4호에 나오는 건물 불법점거·난동 진압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불법점거·난동에 해당되는지 노동부로서는 이런 문제점을 안 따져 보셨습니까? 술개부대가 여기에 투입되어서

진압작전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한 번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따지지 않았습시다.

○**金文洙委員**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노조만이 아니고 민주노조나 다른 사회단체로 확산되면서 솔개부대를 투입한 것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더 악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적어도 공권력에 관한 부분은, 경찰청이라든지 노동부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안 따져보았다, 나는 경찰청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노동부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경찰청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노동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듯이, 또 파악해서도 안 되듯이 노동부 또한 행정자치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그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파업이 일어나서 파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부 업무이지 왜 경찰청 업무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당한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개부대, 경찰력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물리적 조치를 하는 필요성은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노사관계 현상이 아니고 별도의 불법행위로 판단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파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솔개부대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경찰청이 노동부의 고유업무 범위 영역을 침해하면서 들어온 것이지, 이 솔개부대가 왜 투입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부 고유업무인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노동부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경찰청이 노동부 업무에 끼어들어와서 사태를 악화시켜서 일을 망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경찰청은 건물의 불법점거 상태를 원상회복시키고 또 경찰의 고유한 업무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부 소관업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다 알아보았습니다. 솔개부대가 파업현장에 투입된 전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언제 있느냐 하니까 딱 두 번 있었는데 85년도 그러니까 손斗煥 대통령 있을 때인 5공 때입니다. 85년 4월 21일 인천 대우자동차 3층사무실 점거농성에 솔개부대 45명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년9월4일 그때는 盧泰愚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87년9월4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 300여명이 본관 2, 3층을 점거하고 사장 등을 감금농성하여 특공대 49명을 투입하였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金泳三 대통령이 있을 때와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나 적어도 군사정권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개부대 투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청 답변입니다. 이것도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답변한 것이 진실이라면 적어도 이 솔개부대가, 호텔 노동자는 대부분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호텔에는 대우자동차 이런 데 처럼 무슨 화학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에 무슨 특별한 폭발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호텔에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30층에도 미국인이 있고 누가 있고 다 증거가 있어요. 외국 투숙객이 다 있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객실률이 15% 내지 35% 이렇게 객실률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만실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을 점거해 가지고 테러부대가 진압해야 될 부분인지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막아야지,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냐고 했더니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장관님 말씀은 저는 상당한 직무유기요, 또 자기 권한에 대한 올바른 방위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이라면 저는 도저히 장관님 같은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때는 앞으로든 주요 노동현안에는 또 노동현장의 사업장에는 솔개부대가 와서 판을 치는 것이지, 노동부는 그냥 문닫고 노동부 사무실도 솔개부대 초소로 만들어

서 다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 솔개부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현장에는 솔개부대가 아니라 어떤 경찰력도 와서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저희가 보호하고 막을 것입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양상에 대해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당국이 그와 같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그 상황판단의 근거가 경찰에게 있고 그것이 정당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노동현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동현장이 아니고 거기가 테러현장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경찰청의 행자부쪽 설명에 의하면 불법적인 건물점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정상적인 영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관리직 몇 명이 끌려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한다든가 또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전혀 방해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가 하는 그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질서회복을 위해서 투입했다 하는 것이 행자부, 경찰청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부가 나서서 맞았다, 틀렸다 하고 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제가 아주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단히 실망도 되고 또 한편으로 분노도 올라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개부대를 파업현장에 투입한 사례가 지금 13년여만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 더구나 군사정권 때 이외에는 없었다 이말입니다. 더구나 金大中 대통령은 지금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이 솔개부대가 백주대낮에 호텔에, 롯데호텔같은 데는 여성 근로자가 많고, 성폭행했다고 삼백몇십 명 조사도 하시는 그 형편에 테러부대까지 올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님은 앞으로 웬만한 공장같은 데는 다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밖에 못 받아 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솔개부대 투입은 85년에 45명, 87년에 49명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그렇게 흉폭한 테러가 일어난다고, 무슨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도 자제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겠다,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노동부장관이 계속 투입을 시킬 것입니까? 노동부장관은 뭐 하는 것이예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노동부장관이 거기에 투입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막을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李相洙委員** 金文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장관 답변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노사현장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공권력한테 위임하고 노동부는 전연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저는 불법노사현장도 노사현장인 것은 분명하고 만일에 공권력이 개입했다고 하면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한가 여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고 사후라도 관계기관간에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의 개입이 문제가 있었고 노사평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金文洙 위원이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공권력의 개입이 이리이러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노동부와 관계가 없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金文洙委員**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장관님이 자꾸 경찰을 옹호하는 식으로만 하면 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제가 金文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들어간 상황이 왜 거기에 투입했느냐 등등 투입할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또 대테러부대인 솔개부대가 일부 참여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는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은 관계부처간에 확인 차원에서 관계장관들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으로서 가능한 한 이런 현장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달라 하는 것은 평소에도 끊임없이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金 위원님께서 노동부가 공식적인 타당성을 조사했느냐고 물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으로 경찰당국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그 상황이 밤중에 일어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특공부대는 아주 고층의 좁은 통로에 많은 사람이, 수백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열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수가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그때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조사를 한다 해도 확인할 수도 없었다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보세요. 정말 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노동현장에 대 테러특공부대를 투입해서 되겠느냐 했을 때 崔仁基 행자부장관 답변이 뭐냐?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속기록에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자기 밑의 부하직원이지요, 이 2명의 신원을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이 조사를 확대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도 사태가 이 정도쯤 되었으면 그런 답변을 하는데 더구나 노동부장관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노동부장관 중에 장관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처음 보았습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노동자들 분규현장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떠나서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경찰이 왜 함부로 나서냐, 나서더라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나서냐, 자기 권리를 찾아야 노동부 직원이 일을 하지 장관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 노동부 직원 중에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노동자가 장관님 믿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노동부장관 치우고 경찰청장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낫지요. 어떻게 지금 그런 식으로 답

변하십니까? 저는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委員長 劉容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종결하십시오.

○**金文洙委員** 종결보다도 저는 이것은 나중에 속기록 보고 다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테이프가 경찰이 음주를 하고 진압했느냐, 아니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인데 CC-TV 녹화테이프 분석한 것 한번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못 보았습니다.

○**金文洙委員**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경찰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구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보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한 것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 그것이 경찰업무를 그냥 간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계속 파악도 하고 계속 시위하고 국제노동단체에서 항의오고 대통령한테 항의서한이 날아오고 이런데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나쁜 이야기합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농성 중에 임신부가 10여명 있었다고 하고 또 김덕선 씨가, 30세 되었는데 6월29일 진압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한 4시간 동안 복통을 호소하다가 7월15일 태아가 사산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으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이것 조사해 보시고 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인권문제가 되고 여성단체에서도 계속 이것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제가 모든 것을 확인을 안 했지만 상당한 근거없이 이런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김덕선 씨이고 30세입니다. 7월15일 태아가 사산 확인되었다, 이것은 산부인과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로서는 경찰청에다가 특별한 뒤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래야지 모르겠다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보험노조에 대해서 첫째 제 질의에 대

해서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보험노조가 파업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현 상태 불법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왜 불법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우선 그 방법이 폭력을 행사를 했고 목적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목적이 뭐가 안 맞습니까? 이것은 적법하다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이 노조에 가서도 이 파업이 당연히 적법하고 다만 누가 누구를 때렸다, 노조원들이 공단의 朴泰榮 사장을 때렸다 이런 것은 불법이라서 구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도 불법이라고 봐요. 누구를,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불법이지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파업자체가 임단협을 상대로 한 파업으로서 적법한 파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당초에 파업이 임단협하고는 관계없이 의료보험통합 이후 직장의보 조합직원과 원래 공단직원과 배치문제 등등 인사관리문제를 주로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 이전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이 불법파업이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 중간에 임단협의 사항을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추가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임단협과 무관한 통합공단의 조직, 설계와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이것이 혼합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6월27일 이후에 이 부분에서 노조가 하고 있는 파업은 합법한 파업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에 따르는 파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은, 그것 조사 안 해보셨어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서 불법 파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장관님만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임금과 단체협상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저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이전 것을 자꾸 갖다가 붙이지 마세요. 그 이전에 조직을 어떻하느냐 하는데 따른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은 합법 파업 아니냐 이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십시오.

○**金文洙委員**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사회보험노조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측인데 공단이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안 했지요.

그러면 직장폐쇄를 안 한 사업장을 봉쇄해 가지고 노동조합원들이 사업장 출입을 못하도록 하면 불법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입을 봉쇄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불법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지금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를 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주측에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경찰이 시설보호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정의행위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밖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원래는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특별히 내, 외를 구분……

○**金文洙委員** 내에서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내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내서 밖에 가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당연히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러나 이 사업장은 그 이전에 노조원에 의해서 감금, 폭행 사건이 있어 가

지고 여기에 대해 어떤 위협감을 느껴서 시설보호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金文洙委員** 시설보호만 하면 되지…… 누가 신나통을 들고 가는지 몽둥이를 들고 가는지 이것만 보면 되지, 노조 간부가 자기 노조 사무실에 간다는데 직장폐쇄도 안 되어 있는데 행여 되더라도 노조 사무실은 가야지요. 왜 노조 간부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습니까? 왜 노동부장관은 이렇게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그 노조 사무실도 그 시설 내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노조 사무실에 한해서 출입하는 문제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출입하도록 허용해야 맞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러나 다른 어떤 폭력행위 같은 이런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자꾸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폭력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수백명이 몰려 가서 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흥이나 몽둥이나 인화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불을 싸지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아니, 지금까지는 사회보험노조에서 자기 신분증 보여주고 노조 간부 다 아는 사람이고 노조 간부가 자기 사무실에 가는 것 막는 것을 보고 못받으셨어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文洙委員** 지금 저한테 처음 들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을 노조 간부, 노조원 구분없이 수백명이 거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와 전임자 등 일정 숫자를 제한해서 출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즉시 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상근 노조 간부, 자기 사무실의 상근 노조 간부는 즉시 허용돼야 맞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상근 노조 간부는 지금 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부분은 신속한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劉容泰** 장관님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잠시 질의를 중단할까 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방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잠시 중단을 하고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申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申溪輪** 법안심사소위원장 申溪輪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하여 金晟祚 위원과 吳世勳 위원, 李柱榮 위원, 朴仁相 위원, 韓明淑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0년7월21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단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1항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申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아까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도 많은 위원들께서 의견 교환이 있으셨고 또 소위원회도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우선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나머지 단서조항 2개항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문제를 다루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동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文洙 위원님 대단히 안 됐습니다마는 장시간 발언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수 있 기회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여튼 그 노조 사무실 출입 문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님 자신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모든 것에 위배되는 답변을 하셔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단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968명. 이것은 노동관계법령에 투입 못하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지금은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정당하지 아니하고 불법 파업이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불법 파업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장관님이 이것은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泰榮 사장이 7월3일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2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7월4일 마포에 있는 공단 강당에서 전체 지사장회의를 열어서 朴泰榮 공단이사장이 그것을 강요했는데 파악해 보시고 적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험노조는 파업기간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노사간에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협상을 안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이것 불법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상황을 좀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즉시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역의료보험의 적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장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저는 명백하

게 회사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화를 기피하고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는데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사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吳世勳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委員** 지금 명동성당 내에서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서 사회보험노조, 광연맹노조인 롯데·힐튼호텔노조 등이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각 노조사무실이 폐쇄가 되고 노조간부가 구속 내지는 수배되는 등 노사간에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노조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영장발부로 인해서 49일째 성당에서 농성 중입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지난 7월15일에 명동성당을 비공개로 방문해서 민주노총 段炳浩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노사간 현안을 대화로 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권력에 대한 재량권의 여지가 협소해서 별다른 방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현 상태에서 노사간 교섭의 첫걸음은 경찰병력의 철수와 구속 및 수배의 해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호텔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장관께 묻습니다. 사측의 시설보호요청 등에 의해서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 내지 수배상태가 노사문제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지난번에 경찰투입 직후에 통보만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吳世勳委員** 그래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 7월15일 비공개를 원칙으로 명동성당을 방문해서 민주노총 간부들과 대화하던 도중에 장관께서는 정치장관이 아니고 행정장관이다 이렇게 소신을 피력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그렇고 이 노사간의 문제가 정치적인 노력과 배려 없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으로만 해서는 풀릴 것 같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간의 문제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에 혹은 사후에라도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긴밀한 협조 내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아니면 사실상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와 민주노총중앙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에 경찰병력의 철수와 구속및 수배자 해제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2조에 보면 두 번째 중재조항에 의해서 중재개시와 그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가 시작되고 냉각기간이 보름인데 그 보름을 참지 못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불법쟁의가 되어서 경찰투입의 빌미나 어떤 그런 전제를 제공하게 되는 형편이 되는데 이번에 롯데호텔을 보면 사측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한번 걸러진 바가 있고 교섭의 경과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노쪽이 많은 부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법 조항 때문에 불법쟁의행위가 되어서 경찰력이 투입되어 악순환이 되는 여러 사례들을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불성실교섭을 조장할 수 있는 조항, 결과적으로는 악용이 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헌법상의 어떤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데호텔 노조에 국한해서는 이제 경

찰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불법성이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러 피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아서 이번 롯데호텔의 노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측은 불성실했던 데에 비해서 노측은 상당히 자제하고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몇 가지 요건을 보면 그렇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판단근거는 무엇이나 하면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는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해야 되고 둘째,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넷째, 방법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을 때에는 우리 판례상 또 법률상 정당성을 인정 받고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것이 위법이나, 정당하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이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번 롯데호텔노조파업의 경우에, 주체에 있어서는 노·노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합법적인 집행부였고 목적에 있어서도 임금인상, 인사에 관한 중징계위원회 구성문제, 정년, 가장 사활이 걸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합원 범위, 일방중재신청 조항 뭐 이런 것을 다 따져보아도 대체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의 내용이 다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핵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조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롯데호텔에서는 96년12월부터는 정규직을 일체 채용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정규직을 채용 안 했어요. 노조에서 이런 것 보고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쟁의행위목적 중의 일부가, 판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할 때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노사의 실질적인



대등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면적, 배타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프레스센터 관련해서 꾀죄에 걸렸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풍설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번 롯데호텔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사측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한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단체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일방중재조항에 따른 중재기간 중에 쟁의행위 금지사항을 어기고 쟁의를 한 부분이 불법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경찰투입이 되었고 거기에서 폭력성이 나오고 너무 과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판단을 해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폭력성이나 음주 이것은 그것대로 따져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 경찰투입한 시점이 과연 올바랐느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金文洙 위원님 지적한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노동부장관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고, 따져주지 못하고 사후에라도 정리를 못해 주시니까 진압하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지금 무슨 술을 먹었네 안 먹었네,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때렸네 안 때렸네 좀 과격한 행동을 했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을 좀 어겼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무작정 공권력을 투입한다 이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다 질의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질의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아실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면 성희롱문제입니다.

아까 언뜻 들으니깐 한 300건 정도 되어 가지고 한 1,000여명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방대하고

골치 아픈 작업이다, 상당히 곤혹스러우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볼 때 호텔업종도 그렇고 역시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업종도 그렇고 이번에 300명이 각자 자신이 당한 일시, 장소 이것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제가 피해 당한 여직원들의 고소 고발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몇몇 예를 들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압축이 된다고 그래요. 맨날 그것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여러 여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반복을 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방대한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서류로 해서 일단 고발장 받은 것 정리해 가지고 누구 이름이 자주 거명되는가 이것만 분석하면 사실은 며칠 걸리지 않고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 이 사업장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 성희롱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한 직장장에서 문제가 되고 터지기 시작하니까 300명이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고 나설 만큼 평상시에는 감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쟁의가 시작이 되고 기왕에 싸움이 되니까 이렇게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한 사업장에서 300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침을 지금부터는 물론 여성특별위원회도 있고 앞으로 여성부가 신설된다고 그러니까는 노동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직원을 많이 쓰는 사업장 특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처음에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잘 하면 이것을 계약직으로 바꾸어주는데 얼마든지 성희롱하는데 빌미가 될 수 있고, 드러난 것은 성희롱이지만 거의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이미 드러났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상 못할 일들이 저질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업장들을 분류해 가지고 특별히 지도하고 지금까지 무슨 교육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지도하고 수시로 가서 설문조사하고 이 사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노동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이것 하나 쟁의기간 중에 터졌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한다고 무슨 특별수사팀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특별히

터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몇 종류, 상위 몇 %에 드는 사업장을 골라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딸들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 드리면 지금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아까 金文洙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시설보호요청을 해놓는 바람에 들어가는 데도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광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구사대 300명 동원해 가지고 경찰이 들어와 있고 이중으로 용역회사에서 또 맡고 있고 협의하러 들어가다가도 막혀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왜 노동부에서 두고 봅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 좀 듣지요.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韓明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明淑委員 지금 뭇 위원님께서 성희롱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롯데호텔이 지난 3월하고 7월에 1,684명의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직원 400여명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것인데 노동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떻게 처벌하실 예정이신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것은 함께 처벌하겠습니다.

○韓明淑委員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400명을 제외하고 1,684명의 경우에는 교육일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런 보고를 받았습시다.

○韓明淑委員 그러면 지난 7월2일 롯데호텔노조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응답자수 681명 중에 보면 ‘받은 적이 있다.’가 11.8%, ‘기억나지 않는다.’가 6.6%, ‘받은 적 없다.’가 80.6%입니다. 그러니까 ‘받

은 적이 없다.’가 80%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서 1년이 조금 넘었지 않아요? 예방교육실시가 의무교육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대충대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일부만을 놓고 보면 서명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까지 임의로 다 해 버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육안으로 금방 이것을 식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韓明淑委員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롯데호텔에서 제출한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과 서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점 상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직원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글씨체를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데 한 일고여덟명을 한 사람이 작성했어요. 결국 각 사업장별로 대표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것까지 했는데 죽 보세요. 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씨체가 다 똑같지요? 특히 거기 박윤숙하고 김후남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지난 작년 7월8일 교육을 받고 서명란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반복 서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도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 문서를 완전히 허위로 작성했어요. 노동부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노동부가 성의를 가지고 조금만 특별감독을 하셔서 강화하신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삼백몇명이 성희롱을 수년에 걸쳐서 당하는 일은 축소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호텔에 방화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화예방교육은 호텔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차례를 실시하는데 대략 전직원을 향해서 20일 내지 30일간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이 효과가 있어요.

이 호텔의 영업특성상 아마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 이삼십명을 한 달동안에 걸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교육은 방화교육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생각이 우선은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따라서 계획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대리서명까지 해서 허위로 노동부에 보고를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이것이 허위인지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1항에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호텔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특급호텔인데 사업장이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며 정말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곳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이렇게 불철저하게 불실시하고 또 대리서명을 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직장 내의 성희롱 문제를 뿌리뽑고 예방교육 실시의 한 본보기로 삼도록 철저히 규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허위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지도와 병행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법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 법이 사실상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을 만든지 1년이 지났는데 대기업에서 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의 수로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능력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성희롱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쪽 용어로 말하자면 性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며 그 수가

좀더 증가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롯데호텔 노사분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롯데호텔의 노사교섭이 시작됐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그래도 우선 교섭의 실마리가 열린다는 점에서 반가웠고 노동부장관과 또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직접 노사 관계자를 만나서 독려를 해서 이렇게 협상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롯데호텔 노조의 조정신청은 반력을 하면서도 같은 조건에서 제출된 사용자의 중재신청은 받아들인 서울지노위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답변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법절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가 교섭 미진으로 행정지도한 것이 6월 7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중재신청을 한 것이 바로 다음 날인 6월8일입니다. 교섭이 미진하니까 노동위원회로 오지 말고 노사교섭을 더 하시라는 뜻으로 조정신청을 반려했는데 바로 다음 날 사측이 교섭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또다시 지노위에 중재신청을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사측의 부당한 중재신청 때문에 그 노조의 모든 쟁의행위가 불법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당하게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노조법 제63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의 조정신청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출된 사측의 중재신청은 노조법시행령 24조제2항의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지도 했어야 옳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부의 서면답변에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 방법 미숙으로 6월7일까지는 사실상 교섭은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에서는 사실상 교섭이 없었던 중재신청에 대해서 그후로도 약 2주동안 시간을 끌다가 6월20일 중재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절차에 따른 행위인지에 대해서崔 장관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서면답변에서 저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회피하셨는데 노조법의 소관부처가 노동부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소속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관결에 대해서 노동부가 개입할 수는 물론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운영상황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롯데호텔은 분기별로 한 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4분기 이후에는 한 번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관련 법률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 법률의 명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지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기본조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의결해야 할 사항, 보고해야 할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롯데호텔 노사간 분쟁이 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노사협의회 의제로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사협의회 개최 현황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던 조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노동부에서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노동법만 잘 지켜도 분류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롯데호텔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적법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자측이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보면 외부세력인 민주노총이 개입해서 협상의 진전을 막았으며 사태의 악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노총이 롯데호텔 노사관계의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글쎄, 장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민주노총이 롯데호텔 노사관계의 외부세력입니까, 제3세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롯데호텔 노조의 상급단체입니다.

○**韓明淑委員** 그래서 롯데호텔 노조의 직속 상급단체는 사실은 민주관광연맹입니다. 그런데 민주관광연맹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그렇다면 상급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에서 신고증을 발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법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측에서 민주노총을 외부세력으로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고, 노조는 당연히 상급단체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은 이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민주노총을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보는 한 건전한 노사관계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이것을 충분히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공권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노조와의 대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철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노동부장관께서 발휘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朴仁相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仁相委員** 노동부장관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면 오래 가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합시다.

지금 롯데호텔 파업사태가 장관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데호텔이 폐쇄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노력은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朴仁相委員** 도저히 이 친구들 하고는 일 못하겠다 해서 차라리 잠정적으로라도 폐쇄조치를 하고 진압을 한 후에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 오는데 노동부에서는 전연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아마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공권력이 들어간 그 전후 상황에서 아마 누군가에게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지금 노동부장관님이 고발되어 있지요? 지난 14일날 노조가 아마 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아직 잘 모릅니다.

○**朴仁相委員** 본인이 고발되었는데도 몰라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고발장이 저한테 접수된 것도 아니고 통보가 온 것도 아니고 해서……

○**朴仁相委員** 그런데 왜 고발을 했다고 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朴仁相委員** 노동부장관님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는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仁相委員** 장관님이 확실히 그렇게 자신있게 하니까 지금 호텔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하는 것을 분명히 지난번 답변 때 장관님이 몰랐다고 그랬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진짜 몰랐습니까, 사실상 내용을 알았습니까? 바르게 얘기를 해주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진짜 몰랐습니다.

○**朴仁相委員**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관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건데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날 새벽에 투입할 때 장관님 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투입 직전에 장관님 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건데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시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그날 답변할 때 자는 시간을 보니까 몇 시에 알았다 하는데 보니까 그때 잠 자고 있던 것이 아니던데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저희 서울청장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았습시다.

○**朴仁相委員**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내용은 사실상 오래 전에 노동부가 다 알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답변할 때 보면 전부 오리발만 내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뛰어들어서 해결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성의나 아니면 조금 더 연기를 시켜놓고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테니까 시간을 우리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더라면…… 상대방측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대충 확인한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도저히 자신없다 그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전부 사진입니다. 회사에서 낸 것도 있고 이쪽에서 낸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사문제는 쌍방을 같이 앉혀놓고 당사자원칙에 의해서 협상을 붙이는 것이 중재자 입장인 노동부로서는 제일 옳은 일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시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롯데 문제만큼은 어찌된 판인지 노동부가 굉장히 취약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어서 좀 면목이 없습시다. 저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주선하고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했습시다. 결과적으로는……

○**朴仁相委員** 지금 교섭은 노동부에서 붙인 교섭입니까, 노사 당사자 간에 하는 교섭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지금 당사자간에 대화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섭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현재 공권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건의를 하셔서 공권력을 철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공권력 철수 문제는 제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보호를 요청한 시설주측에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급단체에서도 보증을 하고 노동부에서도 경찰력이 철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보장을 하마 해도 지난번에…… 그 분들 얘기입니다. 6월11일인가 대화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10명만 들어와서 하자 했는데 거기에 20명이 들어가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갑자기 수백명이 와 가지고 경찰이 다시 막아서 그 당시에 민주노총 간부들도 연행되고 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안요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사용주측 하고 경찰당국 하고 또 노조측 하고 해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장관님께서 태광MS라는 용역업체를 압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잘 모르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업체가 지금 노조사무실을 전부 포위하고 있거든요?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보면 흔히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역깡패들이 집합한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이름은 태광MS라는 이런 용역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뛰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간부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싸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용역업체가 나와서 싸고 못들어 가도록 방해를 한다면 불법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파악은 파악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불법 맞지요? 불법은 분명히 노동부가 조치를 해야 하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노동조합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노사교섭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 아닙니까?

경찰이 막아버리고 용역깡패들이 들어와서 사무실 막아버리고 노동조합이 지금 어디가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방금 불법단체라 그랬으니까 그것

은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7월20일 사측에서 노조원 네 명을 해고했지요? 그 다음에 교섭위원 한 사람도 해고하고 대의원 두 명, 평노조원도 해고하고 해고사유를 무엇이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파업에 적극 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업에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단체행동이라는 것이 몇 천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를 것 같으면 거기 있었던 사람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노동부에서는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아무 것도 안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회사가 자르든 말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노사간에는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金大中 대정권투쟁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서고 어디고 그것은 쳐다볼 것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가서 노사문제를 정말 당사자가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노동조합 통장을 가압류 했어요. 7월20일 11시30분에 사측은 노동조합 통장을 가압류 했는데 가압류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

○**朴仁相委員** 잘 모르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조합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언어맛을 만큼 언어맛고 물론 회사측에서는 기물파괴했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스스로 나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금까지도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미명하에서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잘못된 것은 이런 것부터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흥금을 터 놓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속에서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발 벗고 나서주어야 합니다. 안 되면 공권력에 의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사문제를 처리했던 것은 70년대 60년대, 주로 勞는 없고 政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노사문제를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노·사·정이 나와서 같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중간의 핵심에는 누가 서야 되느냐 바로 노동부가 서주셔야 됩니다.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뛰겠지만 객관

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보면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 한 직무유기라는 고발이 다른 사람이 보면 노동조합이 맞구나, 장관이 직무유기 했구나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든지 또 그 위의 상급단체를 만나든지 롯데호텔 노조간부들을 만나든지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돌출구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경찰을 철수시켜 달라 그러면 경찰을 철수시켜 주고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안되면 좀 입회하면 어떻습니까? 장관님 입회하에서 양쪽이 같이 앉아서 협상도 붙여보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이 문제는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원체 다들 롯데문제는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에 체포영장이 몇 명이 내려왔느냐하면 13명이 나갔거든요.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쟁의는 거의 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포영장이 다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명동성당에 앉아 있습니다. 노사간의 원칙은 합의될 때 거의 함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金文洙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보기에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체포영장 발부 13명 정도는…… 의사가 파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병원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공안부하고 의논하든 간에 풀어줄 때가 되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사례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정갑득 위원장하고 상당수가 체포영장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사간에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합의하고 도리어 회사가 봐 달라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보건의료산업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몇 군데는 다 명동성당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조금만 역할을 해주면 이 정도 했으니까 체포영장 정도는 해제할 때도 됐다…… 이런 것이 해제될 때 노사문제가 그래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의된 사람, 책임자들을 체포영장으로 해서 한 군데 어디로 몰아 넣었느냐 결국 명동성당에 다 몰아넣

었다 이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엄청나게…… 결과적으로는 대정부 투쟁밖에 없지 노사문제는 노동부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문제하고 현대자동차라든가 노사간에 이미 3, 4월에 합의 다 된 곳의 체포영장 내려져 있는 사람들 이것을 빠르게 협의를 해서 국민화합적 차원도 되고 나아가서는 노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文洙** 朴仁相 위원님, 감사합니다. 金樂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委員** 金文洙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부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다 피하고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롯데호텔의 노조와 사용자측이 처음 교섭요청을 할 때에 사용자측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樂冀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樂冀委員** 3월28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노조측이 교섭 요청을 했는데 사용자측이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습니. 5월12일 다섯번째 가서야 처음 상견례하는 정도, 그런 자세였어요.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정황을 알았으면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하고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전 교섭 상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중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접촉하고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했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불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즘에 와서 얘기이지 그 당시로서는 사측이 교섭에 불성실하다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金樂冀委員** 문제제기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적

어도 네다섯 번씩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불성실한 것이지 성실한 교섭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을 파악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勞動部長官 崔善政** 당시에는 그런 정황파악을 한 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교섭이 결렬되어서 조정신청을 하고 또 중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에서 교섭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 상황은 앞으로 이 사태가 해결된 후에 이전 상황까지 전부해서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현재 고착되어 있는 상황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사용자측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어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현재까지 사용자측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金樂冀委員** 교섭을 해태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金樂冀委員** 사실조사를 해서 해태한 증거가 드러나면 법률적으로 조치 하시겠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또 하나는…… 다 모른다고, 파악 못했다고 하니 질의 하나하나인데 우리 위원들이 정의껏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장관님 답변하시는데 모른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전부 이런 답변을 하니 물어보나 마나인데……

경찰이 6월29일 새벽 4시에 투입되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한 3시간 가량 대치하다가 한 20분 조금 넘어서 다 진압이 되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樂冀委員** 6시50분이나 7시경부터 7시 1, 20분 사이에 진압이 되었지요? 그동안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장관님, 들은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권을 넘어 사람을 짐승 취급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인원을 술개부대가 전부 앞드리라고 해서 굴복시켜 놓고 그것도 2층으로 벽돌쌓듯 사람을 쌓아놓고 그위로 경찰관들이 짓밟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저……

○**金樂冀委員** 많은 사람이 앞드려 있는 상황에서 술개부대들이 등을 밟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꼭 곤봉이나 경찰봉이나 이런 것으로 때려서가 아니고 군화발로 짓이긴 상처가 엄청납니다. 옷이 두꺼운 옷이 아니고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등이 다 짓이겨졌다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노동부장관께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 이런 얘기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노동부는 전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이것은 엄청난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침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롯데나 사회보험노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즈음 상당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8월2일로 예정된 한미행정협정 협상을 앞두고 형사관할권 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저께 외신기자들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노동부에서도 소위 한미행정협정 및 합의의사록 17조에 불평등조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노동부에서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보내셨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樂冀委員** 보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樂冀委員**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우선 첫 번째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규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자, 구체화하자 즉 말하자면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사작전상 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조항을 쉽게 명확하게 고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쟁의절차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것, 한미합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70일간 조정기간, 냉각기간 설정등을 단축하고 또 기산시점도 당겨서 하는 것 등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金樂冀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물어볼 것은 고용문제를 다룬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접고용 형태를 그쪽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검토해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까?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달라고……

○勞動部長官 崔善政 저희가 과거에 간접고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미군측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간접고용으로 할 경우 복잡하게 규정할 것 없이 우리 노동관계법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인건비 부담을 지금은 저희가 69% 정도 하고 있는데 전액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국내의 어느 부처가 이 고용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아마 국방부가 제일 소관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관계부처간에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정부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樂冀委員 좋습니다. 제가 소상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것도 하나의 협상이니까 상당히 안 하려고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이 노출되고 사회문제화되고 특히

이번에 한미행정협정에 환경조항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환경문제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하나 노동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참 엄청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노동부가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겠지만 이러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문제가 터져 가지고 전부 사회문제화되고 국제적으로까지 문제화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우리 위원들 개개인만큼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식적으로 아주 전근대적인 행정관료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확산되고 사회문제화되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文洙 다음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委員 시간도 많이 되고 중복 질의도 있고 한데 몇 가지 정리해서 짚어볼 대목이 이 순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파업과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주식회사 롯데호텔에서 장성원 사장 명의로 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수신, 호텔 롯데 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직무대행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이것이 지난 선거 때 김병득 후보와 정주억 후보와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 법정으려가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위원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한테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러면 지금 교섭을 할 수 있는 직 무대행을 말하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이 진압한 이후에 보낸 공문이니까……그러면 지금 정주억 위원장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위원장입니다.

○**申溪輪委員** 위원장이지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申溪輪委員** 구속이 되었든 어떻든 그 신분과 관해서…… 내가 듣기로는 선거 때부터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김병득 후보가 승리했는데 정주억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재검표해 가지고 표가 뒤집어진다고 말이에요. 위원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위원장 신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툼이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런 다툼이 이번 사건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병득 위원장측과 정주억 위원장측과 이 사태를 보는 눈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정주억 위원장이 위원장이라고 했지만 다시 항소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申溪輪委員** 다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왜 불법파업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롯데호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조원 중의 상당수도 왜 불법파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근거도 상당 부분이 불법파업이라는데 근거하고 있고 또 체포영장발부하고 구속시킨 것도 불법파업이라는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불법파업의 근거가 지난 98년7월31일자 단협 91조 이른바 일방중재조항이지요. 이 조항에 의해서 일방중재가 사측에 의해서 신청될 수 있다라고 단협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 사측에서 일방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재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간을 안 주고 파업한 것이

지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래서 불법파업이 된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申溪輪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업이 되었지만 공익사업장도 아니고 필수공익사업장은 더더욱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협에 의해서 그것도 사측이 일방중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불법파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파업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단협 조항을 보니까 어느 한 쪽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하고 회사측에 통보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통보서를 못 받았습시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통보한 날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귀한 단협에 의해서 불법파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기간을 보니까 98년7월3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 보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칙 2조가 뭐가 있느냐 하면 효력의 유지 그래 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협상으로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간 유예한다고 정해 놓았던 말이에요. 또 이 조항에 의해서 말하자면 불법파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성이 부족한 데에다가 기간이 지나서 부칙의 효력유지로 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법파업의 근거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일방적인 불법파업의 근거였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순수 노사문제로 다루어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파업도 불법파업이지만 지금 사측이나 경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파업 자체의 불법성도 있지만 파업기간 중에 많은 영업방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파업 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로 되어 있

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법과업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위법성과 또 영업방해, 업무방해를 해서 위법성이 온 것 이 두 가지인데 그 업무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찰 자료, 회사측 자료, 노동조합 자료 보니까 업무방해를 했다는 사진들과 증거들을 즉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경찰의 진압이 과잉진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작은 어떤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영업방해, 업무방해가 과연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양태로 있었는지 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규명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과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업이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의 진압이 적정한 때에 이루어졌고 말하자면 정당한 경찰의 진압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불법과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진압이 아니었느냐, 특공대를 투입하고 과다하게 폭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측 자료를 보니까 경찰도 15명 정도 상당히 많이 다쳤다 이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잉진압 여부가 하나의 논점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6월28일 09시10분부터 30분까지 총무팀장 3명을 노조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가지고 조합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렸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경찰진압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까마는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도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방해가 있었는가, 로비라든가 영업장이라든가 사무실 기타 면세점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등 그 다음에 폭언을 하는 등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

연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국민일보 6월10일자에 나온 사진이에요. 아마 총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사수대 복장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양쪽에 다 물어보았습니다.

노동조합측에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해서 빌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노조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총무팀장이 쇼를 하고 있다. 우리가 꿇으라고 한 적도 없고 꿇린 적도 없는데 저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비는 모양을 해서 카메라에 찍혀 노조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자측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롯데점에 있는 노조원들이 로비로 밀려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것을 막다 막다 여기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소연하다가 자기가 진심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제발 나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진기자가 찍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날 말하자면 6월28일에 무릎을 꿇렸느냐, 안 꿇렸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는 이렇게 쇼를 하고 나쁜놈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노조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말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또한 과잉진압 여부의 중요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실교섭 여부입니다. 교섭을 성실하게 했는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이 정말 성실한 교섭을 안 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대타결이 임박했다. 서울노동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주선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타결할 듯 하다가 사측이 떠나 버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자측이 성실교섭을 하지 않고 기만적으로 대했던 것인가 하는 것도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측에서는 노동부가 너무 지나치게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시한 것이지 충분히 협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무래도 과잉진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향후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어떻게 롯데호텔 노조문제를 잘 해결해서 피해가 적게 되고 노사가 화합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국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동부도 장관 이하 많은 분들이 이것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노조원들도 아마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측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향후대책이 중요한데 지금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의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재조정 이후로 노조원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나는 억울하다고 재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사용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입장을 말하면, 여기 공문에 의해서 본다면 2000년도 임단협 안은 중재재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金文洙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불법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라 이겁니다. 세 번째 돌아와서 사태가 수습이 되면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사후수습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사측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측은 중재조정위에 재심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동조합은 다시 교섭하기를 원합니다. 중재재정과 관계없이 다시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입장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노동부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어떻게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영부영하고 좋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쉽게 넘어 가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후의 대화와 관련해서 늘 그렇습니다마는 형식상 불법파업이 되면 형사상 책임, 이미 많은 형사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롯데호텔측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업상의 손해를 만약에 민사상의 소송으로 나갈 경우에 중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것이 협상 재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노동부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롯데호텔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들어 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지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운데 그래도 올바른 지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동부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아픈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노사문제를 공안권력이 들어오기 전에 풀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했다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이끌어서 말하자면 노사화합 쪽으로 간다면 비록 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향후에 새로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동부 행정지도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스위스그랜드호텔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이것도 영업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측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스위스그랜드호텔도 롯데호텔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지도를 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병노련에서 그렇게 발전했지요. 이게 요즘 보니까 체포영장도 몇 사람 발부되고, 서울대 병원 건으로 해서도 그렇고…… 전에 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하면 불법파업일 수 밖

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책임지는 문제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법률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산별교섭, 산별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적으  
로 산별교섭이 진행이 잘 되면 국가적으로도 도움  
이 되지요. 그래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약간의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산별 중앙교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부가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또 법  
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노동  
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권장할 것으로 파  
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 이른바 산별 중앙교섭에 대해서  
노동부의 의견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그 위법성  
을 떠나 가지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할 것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金晟祚 위원님 발언하  
여 주십시오.

○**金晟祚委員** 경북 구미 출신의 金晟祚 위원입  
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전국적인 관심사  
가 되고 있는 롯데호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으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의 포커스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많은 노사분규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5, 6, 7 이 3개월 동안 구미에 노사  
분규가 작년 대비해서 숫자상 얼마 정도 증가했는  
지 파악하고 계신 것을 나중에 자료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구미는 우리나라 전체  
총 수출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8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최근  
노사분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국적인 이슈에 가려서 그것에 대  
해 노동부가 관심을 덜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마음  
을 떨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환경노동위원회  
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 노사분규에 대  
해서 저에게 노동부에서 한번 현황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  
해서 정말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몇  
페이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세로 의회에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노사분규업체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나중  
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는데 발생원인과 그리  
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  
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최근 새한문제가 구미에서는 상당한 이  
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미문제라고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구미라고 하지 말고 우  
리나라 전체 지역 중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  
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의 노조가  
하나 신고되어 있었지만 그 노조의 활동이 원활  
하게 활동적이지 않았고 그 회사가 삼성그룹 산  
하의 기업이다 보니까 무노조원칙에 의해서 노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삼성그룹이 분리되면서 옛날 제일합섬이 새한으  
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면서 새  
로운 노조가 발생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  
들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  
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보고받고 있습니다.

○**金晟祚 委員** 대부분?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晟祚委員** 그래서 양자간이 다 주장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을 다 담보로 하고 주장을 하는데 여  
러 가지 문제 중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 보고  
를 받았고 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쭙어  
보겠습니다.

새한노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부의 편  
람을 확인해 보니까 새한노조가 없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마포구청이 “노동단체  
카드를 제출치 아니하여 편람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 安鍾根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매년 말 현재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듭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것이 노동부도 관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관리하는 단체가, 관리하는 조직이 매년 말 저희들한테 노동조합카드를 보내줍니다.

○**金晟祚委員** 잘 알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2월 말까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런데 개별노조가 행정관청에 변동상황이라든가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것이 누락될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몇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하지만……

○**金晟祚委員** 그러면 노사분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그것이 누락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아서 작년엔 있던 것이 안 들어온다든가 또 갑자기 인원이 많이 변동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개별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지금은 마포구청이 노동단체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포구청까지는 이 단체카드가 있고 이것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위임이 아니고 법에서 관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개 시·도에 거치는 사항은 노동부가 그리고 1개 시·도내의 노동조합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하도록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업무가 아닙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노동부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통제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통제되지 아니할 때 어떤 제재방안이나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가?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질의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업무처리를 하지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金晟祚委員** 새한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에 속하고 아마 노동자수도 적지는 않을 것인데 이러한 노동단체카드를 마포구청에서 노동부로 2월 말까지 사본을 제출치 아니함은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글썬,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金晟祚委員** 결과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 쪽에서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晟祚委員** 실수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글썬,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晟祚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의 조사에 의하면 마포구청에서 실시한 결과 임시총회가 2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두 번의 총회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저희들도 사실 이 사건을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파악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한, 세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金晟祚委員** 국장님! 제가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조사해서 인지했습니다. 혹시 또 지방사무소나 이런 데에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晟祚 위원님 방에서 구미사무소에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金晟祚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뿐이지 구미사무소라 할지라도 우리 노동부 산하에 모든 업무는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나 자료요구에는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새한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단체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우리 노동부에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이 무노조였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인들 그리고 노조관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명노조 혹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노조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 노사협의회 등을 운영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면 또 회사가 분리되었고 그렇다면 그 노조가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사측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동부가 취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룹이나 구미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럴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노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이 작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해결기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全在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지금 여성특별위원회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하는 질의가 앞서 하시는 위원님들과 중복될까 싶어서, 사실은 제가 롯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지만 이것은 제가 속기록을 읽어본 다음 빠진 것이 있으면 다

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앞서 우리 金晟祚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한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폭력이 자꾸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서 공권력에 대한 반감 내지는 저항감이 깊어져가고 그로 인해서 공권력의 신뢰는 더 무너져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단체협상을 벌이는 근로자들로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호텔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폭력진압과 같이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인데 새한노조가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앞에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

다. 장관님, 그러나 저는 이 사진을 차마 들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고 때리고 이러한 장면을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하고 관련되어서 들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측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또 국가기관의 행정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민망스럽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장관님,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7월6일 전경 200명과 사측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단체 골든벨이라는 용역업체가 전자봉 등으로 휴면노조 내지는 유명노조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던 근로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주장에 의하면 백주대로에서 노조원을 본넷트에 매달고 10km를 달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조금 전에 노동부에서 담당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부터 인지했다고 하는데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업무는 법률에 의거해서 자치단체가 담당하더라도 노사간에 마찰이나 갈등을 지도하는 업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폭력이 발생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장관님께 즉시 지휘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휘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 부분은 제가 조직을 미처 확실히 장악을 하지 못한 무능력의 탓도 매우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시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지금이라도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 업무는 직접 장관님께서 챙기셔서 매듭을 풀어주는 쪽으로 과연 휴면노조인가 유명노조인가 하는 것도 살펴주시고 또 그런 유사한 폭력사태가 다른 곳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한노조는 구미노동사무소의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견디다 못해 고소 고발하기 전까지 지방사무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노동조합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폭력에 희생 당하건 유명노조에 의해서 노동 3권을 박탈 당하건 우리 지방사무소는 왜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 노동조합들의 애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동부가 앞으로 어떤 노동정책을 펴 가더라도 근로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함께 신나게 참여하는 노사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같은 생각입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속히 사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따 가실 때 필요하시다면 이 사진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사항을 하나 묻겠는데 대전 시내버스가 14개사가 있는데 그 중의 12개사가 단체협약을, 공동교섭을 해서 임금협상을 끝냈습니다. 그 중의 2개사는 한국노총 산하에 있다가 보다 더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하겠다고 조직을 탈퇴해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사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적용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2개 노동조합에서 4월14일에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랬더니 사측에서는 4월24일, 4월25일 대전시청에 임금협약에 관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5월12일날 또 노사가 계속 임금교섭을 했습니다.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 충남지노위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법률요건만을 중시해서 한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인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데에서 보다 나은 것을 얻어낸 것을 적용해서 근로자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 원법의 취지라고 노동법 학자들도 책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지노위가 이 2개 버스회사에 대해서 임금교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역적 구속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만 가지고 성급하게 지역적 구속력을 인정한 것은 그 원법의 취지를 넘어선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에 갑니다마는 충남지노위가 해석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인지를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리고 장관님이 원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 일간지에 사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만은 적어도 일선 지방사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휘 보고를 하고 또 담당국·과장이 그것을 챙겨서 장관님께 보고하고 처분지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全在姬委員** 그리고 충남지노위의 결정사항도 제가 이것을 안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인정할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견지에서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알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 오늘 여러 위원



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롯데호텔의 노사분규를 비롯해서 현재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문제화된 그와 같은 노사분규를 포함한 제반 노동현안에 대해서 하루속히 노사가 원만히 화합하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자기들의 일터에 돌아가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사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소임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들 또 추후에 답변을 요구했던 그 질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관계위원님들께 자료로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 .....

○金樂冀委員 위원장님, 질의하신 관계위원뿐 아니라 중복돼서 저같은 경우는 전부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배포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요.

○委員長 劉容泰 알겠습니다.

지금 金樂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하신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물론 그 자료를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金文洙委員 아까 질의할 때 나왔겠지만 SOFA 관련돼 가지고 노동부에서 안을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劉容泰 오늘 이상으로 노동현안과 관련된 보고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出席委員

金樂冀	金文洙	金晟祚	朴仁相
朴赫圭	申溪輪	吳世勳	劉容泰
李相洙	李柱榮	李浩雄	全在姬
鄭宇澤	韓明淑	洪思德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李昌熙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	관	崔善政	
차	관	金相男	
기획관리실장		文亨男	

고용정책실장	金在英
노동국장	安鍾根
근로기준국장	鄭秉錫
산업안전국장	朴吉祥
근로여성정책국장직무대리	申洛
고용총괄심의관	金聖中
능력개발심의관	宋智泰
노사협력관	徐萬植
국제협력관	崔炳勳

【報告事項】

○議案回附

水道法中改正法律案(鄭東泳 의원 대표발의)

(7월 18일 鄭東泳·金容甲·張永達·李源性·玄敬大·韓和甲·鄭宇澤·李龍三 의원의 67인 발의)  
7월 19일자 회부됨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公認勞務士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7월 20일 정부제출)  
이상 2건 7월 20일자 회부됨

○請願回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으로부터 金樂冀 의원의 8인의 소개로 제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에관한청원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 2000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으로부터 朴仁相 의원의 8인의 소개로 제출)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7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으로부터 金樂冀 의원의 7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7월11일자 회부됨